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 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기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4. 21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 4. 17

다. 상정일자 : 1992. 4. 22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별첨한 참조

나. 주요골자 : 별첨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 별첨 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구 전체 구민부담 세액과 구세입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주거지역과 공장 57개소 6천700만원중 3천400만원이 줄어짐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류대형위원의 동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